

1.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1) 기획조정처

가. 제안이유

- 1)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산업동향 분석과 유망 직종 연계 학과 운영 필요성
- 2) 향후 입학자원 수급 전망에 기반한 학과 개편 필요성
- 3) 정부의 전문대학 관리정책(전문대학특성화, 대학구조개혁)연계 우리대학 특성화 사업 핵심 분야 도출 필요

나. 주요내용

- 1) 현행 6개 학부를 세분화 하여 9개 학부로 개편 운영
- 2) 아동보육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과 세부 전공단위로 운영 하도록 함
- 3) 각 학과별 세부 전공단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하도록 함

다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[변경 전]

제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

대계열분류	학부	모집단위(학과명)	입 학 정 원			수업연한
			주	야	계	
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유아교육과	96		96	3
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사회복지과	100	27	127	2
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아동보육과	30		30	2
인문사회	호텔관광외식학부	호텔관광과	70		70	2
인문사회	호텔관광외식학부	항공서비스과	30		30	2
자연과학	간호학부	간호학과	140		140	4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임상병리과	120		12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물리치료과	80		8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방사선과	86		86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기공과	80		8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위생과	120		12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의무행정과	80		8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안경광학과	79		79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식품영양과	60		60	2
자연과학	호텔관광외식학부	외식조리과	90		90	2
자연과학	한류예술학부	미용피부테라피과	86		86	2
자연과학	군사학부	의무부사관과	70		70	2
공 학	군사학부	전투부사관과	40		40	2
예·체능	한류예술학부	주얼리디자인과	30		30	2
			1,487	27	1,514	

[변경 후]

제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

대계열분류	학부	모집단위(학과명)	입학정원			수업연한
			주	야	계	
인문사회	<u>사범학부</u>	유아교육과	96		96	3
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사회복지과	<u>130</u>	27	<u>157</u>	2
인문사회	<u>글로벌호텔관광학부</u>	<u>글로벌호텔관광과</u>	70		70	2
인문사회	<u>글로벌호텔관광학부</u>	<u>글로벌항공서비스과</u>	30		30	2
자연과학	간호학부	간호학과	140		140	4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임상병리과	120		12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물리치료과	80		8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방사선과	86		86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기공과	80		8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위생과	120		12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의무행정과	80		8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안경광학과	79		79	3
자연과학	<u>식품클러스터학부</u>	식품영양과	60		60	2
자연과학	<u>식품클러스터학부</u>	외식조리과	90		90	2
자연과학	<u>뷰티케어학부</u>	<u>미용피부화장품과</u>	86		86	2
자연과학	군사학부	의무부사관과	70		70	2
공학	군사학부	전투부사관과	40		40	2
예체능	<u>디자인학부</u>	<u>3D제품디자인과</u>	30		30	2
합 계			1,487	27	1,514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5조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과개편 및 변경) ① 아동보육과는 사회복지과에 통폐합 하여 세부 전공으로 운영 하며, 호텔관광과는 글로벌호텔관광과로, 항공서비스과는 글로벌항공서비스과로, 미용피부테라피과는 미용피부화장품과로, 주얼리디자인과는 3D제품디자인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한다.

제3조(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아동보육과는 2019학년도말까지 운영하며 그 이후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한다.

2) 교무처

가. 제안이유

- 1) KOCW 및 K-MOOC 등의 공개강좌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한 인정 근거 마련
- 2)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제8장 교과 및 수업 제35조(수업)의 규정개정

나. 주요내용

- 1) 공개강좌에 대한 학점인정 근거 마련
- 2) 제8장 교과 및 수업 제35조(수업) 제③항 삭제

다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(안)
제34조(학점인정) ① 국내·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. ②~⑪(생략)	제34조(학점인정) ① <u>국내·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공개강좌(KOCW, K-MOOC 등)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</u> ----- ②~⑪(현행과 같음)
제35조(수업) ①~②(생략) ③수업시간표는 강의개시 2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. ④(생략)	제35조(수업) ①~②(현행과 같음) <u>③삭제</u> ④(현행과 같음)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